

## 대학원입학전형에관한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대학원 학칙 제2장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

제2조 (입학전형방법 및 지원자격) ① 이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모집한다.

② 학칙 제6조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제출서류 및 전형료) ① 이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학사(석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부
3. 학사(석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1부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일반전형) ① 일반전형은 서류전형과 구술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학과의 특성에 따라 실기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

1. ~ 4. <삭제 2008. 3. 1>

②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시세부계획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08. 3. 1, 2013. 5. 1>

1. ~ 2. <삭제 2008. 3. 1>

③ <삭제 2008. 3. 1>

1. ~ 3. <삭제 2008. 3. 1>

④ <삭제 2013. 5. 1>

⑤ 합격의 결정은 대학원장이 입학정원과 지원자의 입학시험 성적을 토대로 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을 결정한다.

제5조 (특별전형) ① 특별전형의 자격기준은 학위과정의 성적, 연구능력, 학문의 태도가 탁월하고 연구방향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3. 1>

②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시세부계획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13. 5. 1>

③ <삭제 2013. 5. 1>

④ 합격의 결정은 대학원장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을 결정한다.

제6조 (신입생 등록)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된다.

제7조 (입학사정) 각 학위과정의 입학 사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행한다.

제8조 (입학) 이 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입학이 허가된다.

### 부 칙

1.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일반대학원입학전형에관한세칙, 산업대학원입학전형에관한세칙은 폐지한다.

3. 이 변경 세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변경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변경 세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변경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변경 세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변경 세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원교과과정운영에관한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대학원학칙 제19조의 교과과정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과과정 편성) 이 대학원 각 과정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이 편성하며, 단, 특수대학원에서 학위논문이나 작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교과과정 편성은 별도로 할 수 있다.

1. 기초(학과)공통과목 : 학과의 전체 학생에게 전공학문을 이수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본적인 과목을 말한다.
2. 전공과목 : 전공학문의 연구를 심화시키는데 필요한 과목을 말한다.
3. 부전공과목(동일 학과내 부전공)
4.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점교류과목 : 학과별 전공과목외에 타 학과(타 대학원 포함)에서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말한다.
5. 선수과목 : 지원전공분야가 동일하지 않는 자 및 특수대학원 출신자는 일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말한다.

제3조 (교과과정 설정 및 개정) ① 각 과정별 교육과정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1. 정기개정은 3년 주기로 실시하며, 2년 이내에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시개정은 학생의 요구, 학문적 동향, 사회적 변화에 따라 수시개정 할 수 있다.

② 각 학과(전공)주임교수는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과정별 교과과정표를 작성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5. 1>

제4조 (교과목 설정의 원칙) 교과목을 설정할 경우에는 국제적 학문 추세에 맞는 각 과정의 학문수준과 해당학과의 학문적 체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기초공통과목, 전공과목, 선수과목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제5조 (교과목 개설) 각 학과주임교수는 교과과정표 중에서 개강할 교과목을 선정하고 이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공동강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거나 유익할 경우 대학원장은 타 대학원과 공동강의를 허락할 수 있으며 학점교류는 대학원장의 승인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과목 담당교수 자격)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 담당교수는 본 대학교 정년제 전임교원(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예·체능계열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7. 1, 2013. 5. 1, 2017. 3. 1>
2. 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 담당교수는 본 대학교 정년제 전임교원(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 7. 1, 2013. 5. 1, 2017. 3. 1>

제8조 (학과주임교수) ① 대학원장은 학위과정이 설치된 각 학과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학과주임교수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과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학과주임교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과주임교수지도교수및공동지도교수에관한세칙에 따른다.

제9조 <삭제 2014. 9. 1>

제10조 (교수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교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매학기 개강일 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학생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11조 (강사 위촉) ① 교과운영상 외래강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7조에 의한 교원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② 학과주임교수는 강사추천서와 이력서, 제반 서류를 매학기 개강 전 소정의 기간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강사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학과주임교수가 강사변경신청서를 사유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학과·전공변경)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3학기 이내로 허용하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전에 전출학과와 전입학과의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3. 1>

## 부 칙

1.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교과과정및학과등록에관한세칙은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세칙의 부칙 2(폐지규정)에 의하여 구 세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세칙 시행당시의 각 대학원 재적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세칙을 적용한다.
4. 이 변경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변경 세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변경 세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변경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변경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원외국어시험및종합시험에관한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대학원 학칙 제5장 자격시험에 관한 그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및 자격) ①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② 외국어시험은 외국어 문헌의 해독 및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③ 종합시험은 해당 전공분야와 이에 부수되는 관계분야의 학식을 종합평가 하는 데 있다.

제3조 (응시자격) 각 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가. 외국어시험 : 2회 이상의 정규 등록을 필한 자

나. 종합시험 : 일반대학원 및 산업문화대학원은 3회 이상의 정규 등록을 필한 자로서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 특수대학원(산업문화대학원 제외)은 4회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로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동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각각의 합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 3. 1, 2013. 3. 1>

2. 박사학위과정

가. 외국어시험 : 2회 이상의 정규 등록을 필한 자

나. 종합시험 : 4회 이상의 정규 등록을 필한 자로서 27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2. 5. 1>

제4조 (응시절차) 각 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응시료) 각 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시험시기) 각 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시기는 매 학기초 각 대학원에서 지정한 날에 실시한다.

제7조 (시험과목) 각 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7. 1>

1. 석사학위과정

외국어시험의 과목은 영어로 하며, 종합시험은 각 학과별로 지정한 종합시험 과목 중 일반대학원은 2과목, 특수대학원은 2과목 이상으로 한다. 단, 교육대학원은 전공과목 중 교과교육학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외국어시험의 과목은 영어로 하며, 종합시험은 각 학과별로 지정된 종합시험 과목 중 3과목으로 한다. 단, 학과주임교수가 전공과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학원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제2외국어(독어, 불어, 중어, 일어)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제8조 (시험방법) ① 각 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각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영어시험의 경우 TOEFL, TOEIC, TEPS의 취득점수가 이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 인정 점수 이상이면 영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

과정	TOEIC	TOEFL		TEPS
		CBT	IBT	
석사	600	160	60	480
박사	650	200	75	530

③ 외국인 학생의 경우 영어시험은 한국어 또는 자국어로도 실시할 수 있으며, 제2외국어 시험의 경우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11. 5. 1>

④ 외국어시험(영어)에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은 학과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전공영어 시험으로 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1. 5. 1, 개정 2013. 5. 1>

제9조 (시험위원)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시험위원을 본 대학교 및 대학원의 교과목 담당교수 중에서 위촉하여 출제 및 채점을 의뢰한다.

제10조 (합격판정)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11조 (재응시) 각 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서 각 과목의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얻은 과목은 합격으로 하고,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재응시할 수 있으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12조 (결과보고)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결과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 부 칙

1.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일반대학원외국어시험및종합시험에관한세칙, 산업대학원외국어및종합시험시행세칙, 영상정보대학원외국어및종합시험시행세칙은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세칙의 부칙2(폐지규정)에 의하여 구 세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세칙 시행 당시의 각 대학원 재적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세칙을 적용한다.
4. 이 개정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세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세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원학위논문심사에관한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대학원 학칙 제6장 학위논문에 관한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각 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논문제출학기에 수료 예정인 자 또는 수료자
2. 박사학위과정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논문제출학기에 수료 예정인 자 또는 수료자

제3조 (논문지도교수) ① 석사학위청구의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정년제 전임교원 부교수 이상 또는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 7. 1, 2013. 5. 1>

② 박사학위청구의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교의 정년제 전임교원 부교수(박사학위소지자) 이상 또는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 7. 1, 2013. 5. 1>

③ 논문지도교수는 일반대학원 및 산업문화대학원은 입학년도 1학기말까지, 특수대학원(산업대학원 제외)은 3학기초까지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12. 1, 2013. 3. 1, 2014. 9. 1>

④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과주임교수는 논문지도교수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구지도의 공백이 발생하여 일정기간 동안 타 전공분야의 연구지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공동지도교수는 지도교수와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1>

제4조 (학위신청구비서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청구논문

-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
- 나.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추천서 1부
- 다. 학위논문 요약서 1부 <개정 2011. 3. 1>
- 라. 연구윤리서약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5. 9. 1>

2. 박사학위청구논문

-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
- 나.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추천서 1부
- 다. <삭제 2011. 3. 1>
- 라. 학위논문 요약서 1부 <개정 2011. 3. 1>
- 마. <삭제 2011. 3. 1>
- 바. 연구윤리서약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5. 9. 1>

3. <삭제 2014. 12. 1>

4. <삭제 2014. 12. 1>

제5조 (논문의 작성방법) ① 학위논문의 작성방법과 체제는 이 대학원 학위논문작성지침에 준해야 하며, 논문의 용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초록(영어를 원칙으로 함)을 첨부해야 하며, 논문이 외국어일 경우는 국문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②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의 주제는 전공의 교과별 교육이론, 교육방법, 교육과정 등과 관련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용 논문제출 편수) ①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는 심사를 위하여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서는 심사위원 인원수 대로 학위청구논문을 심사전에 학과(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학과(전공)주임교수는 심사위원장에게 배부한다.<개정 2011. 3. 1, 2013. 5. 1>

②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가제본 된 것으로 한다.

제7조 <삭제 2010. 3. 1>

제8조 (논문심사위원 제청) ① 학과주임교수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가 있을 경우 논문심사위원의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제청한다.

② 제청된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13. 5. 1>

제9조 (논문심사위원 자격) ①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학위과정별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 : 3인으로 구성하되, 본 대학교의 정년제 전임교원 부교수 이상 또는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단, 논문의 특성상 외부심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1명만 가능하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7. 1, 2013. 5. 1>

2. 박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 : 5인으로 구성하되, 본 대학교의 정년제 전임교원 부교수(박사학위소지자) 이상 또는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하고 1인 이상 2인 이하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 논문의 특수성 등으로 외부전문가 1인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 10. 1, 2012. 7. 1, 2013. 5. 1>

②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심사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주심)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0. 3. 1>

③ 심사위원장(주심)은 심사과정에서 타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논문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장(주심)이 본 대학교 정년제 전임교원일 경우 교수 이상의 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0. 3. 1, 2013. 5. 1>

제10조 (논문심사위원의 교체금지)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논문의 심사 중 교체를 금지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체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방법)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구술시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각 학과 또는 학회별로 1회 이상의 공개 학술발표회를 가져야 한다.
3. 예비심사는 심사위원장의 주관 아래 2회 이상 공개 또는 비공개로 심사한다.
4. 예비심사에 있어서는 논문의 당해 학기 내 완성 가능성을 판정하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본심사(구술시험)를 행한다.
5. 본심사(구술시험)의 판정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6. 논문의 평가는 “가” 또는 “부”로 하되 판정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구술시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각 학과 또는 학회별로 1회 이상의 공개 학술발표회를 가져야 한다.
3. 예비심사는 심사위원장의 주관 아래 3회 이상 공개 또는 비공개로 심사한다.



4.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비심사의 심사요지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삭제 2006. 12. 1>

6. 본심사(구술시험)는 공개발표회 형식을 취하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7. 논문의 평가는 “가” 또는 “부”로 하되 판정은 심사위원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 (논문반려) 예비심사 후 논문내용이 학위청구논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논문내용이 부실하여 당해 학기 내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할 때에는 심사위원장은 그 사유서와 함께 논문을 대학원장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사결과 보고) 논문의 본심사가 완료된 직후 심사위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

1. 석사학위청구논문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보고서 1부.

나.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1부

다.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지서 1부.

라. <삭제 2015. 9. 1>

마. 표절예방프로그램 사용 확인서 1부 <개정 2016. 3. 1>

2. 박사학위청구논문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보고서 1부.

나.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1부

다.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지서 1부.

라. <삭제 2015. 9. 1>

마. 표절예방프로그램 사용 확인서 1부 <개정 2016. 3. 1>

제14조 (최종결정) 논문심사에서 통과된 학위논문은 대학원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대학원장은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 (학위논문의 완성 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에서 합격된 자는 예비심사 및 본 심사에서 지적된 바를 보완, 완성하여 그 완성된 논문과 디스켓 및 저작물 이용허락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부수는 별도 공문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3. 5. 1, 2013. 6. 1, 2016. 3. 1>

제15조 1 (논문지도) ① 논문 지도교수는 철저한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논문지도 학생의 논문대필 및 부정행위 방법이 확인되면 본 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검정에관한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0. 10. 1>

제16조 (우수논문 포상) 논문심사에서 통과된 학위논문이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학계와 사회에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일반대학원학위논문심사에관한세칙, 산업대학원학위논문심사에관한세칙은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세칙의 부칙 2(폐지규정)에 의하여 구 세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세칙 시행 당시의 각 대학원 재적생에

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세칙을 적용한다.

4. 이 변경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변경 세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변경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변경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변경 세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변경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변경 세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변경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변경 세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변경 세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변경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변경 세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변경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변경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연구윤리서약서

본인은 동의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이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첫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직하고 엄정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한다.

둘째, 논문작성 시 위조, 변조, 표절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어떤 연구부정행위도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학 위 명 :

학 과 :

성 명 : (서명/인)

지 도 교 수 : (서명/인)

심 사 위 원 장 : (서명/인)

동의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대학원학위수여에관한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대학원 학칙 제7장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위의 구분) 이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 학술석사학위, 학술박사학위
2. 특수대학원 : 전문석사학위
3. 명예박사학위 : 학술학위에 준함.

제3조 (학위의 종별) 이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석사, 박사, 명예박사로 하며 전공·학과별 학위명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2. 1, 2010. 3. 1, 2014. 3. 1, 2014. 9. 1, 2014. 12. 1, 2015. 9. 1, 2015. 10. 15, 2016. 3. 1, 2016. 5. 1, 2017. 3. 1>

제4조 (학위기) 일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명예박사의 학위기는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하며, 각 특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기 및 연구실적증명서는 별지 제4호~제6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08. 3. 1, 2009. 2. 1, 2014. 1. 1, 2017. 3. 1>

제5조 (학위수여 요건) ① 학위는 이 대학원에서 학칙 제20조에 의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각종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또는 작품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된 자로 한다.

② 특수대학원에서는 학위논문 또는 작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학위수여에 필요한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된 자로 한다. <개정 2006. 3. 1>

제6조 (학위수여) 학위논문(작품)심사에 통과된 논문(작품) 및 특수대학원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의 인정에 의하여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제6조 2 (명예박사학위 수여) ① 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 종별은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되, 이를 받을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의하여 구분한다.

③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결정하며,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10. 10. 1>

제7조 (학위수여횟수 및 시기) 석사, 박사의 학위수여는 연 2회로 하며, 명예박사의 학위수여시기 및 횟수는 별도로 한다.

제8조 (학위복장) 석사 및 박사학위복의 학위종별 후드 색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 2. 1, 2010. 3. 1, 2014. 3. 1, 2014. 9. 1, 2014. 12. 1, 2015. 9. 1, 2015. 10. 15, 2017. 3. 1>

제9조 (학위수여의 취소) ① 박사 또는 명예박사의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박사 또는 명예박사의 학위수여 취소는 대학원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 부 칙

1.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일반대학원학위수여규정, 행정대학원학위수여규정, 경영대학원학위수여규정, 산

업대학원학위수여규정, 교육대학원학위수여규정, 영상정보대학원학위수여규정, 행정대학원학칙시행세칙, 경영대학원학칙시행세칙, 교육대학원학칙시행세칙, 영상정보대학원학칙시행세칙은 폐지한다.

3. 이 세칙의 부칙 2(폐지규정)에 의하여 구 학위수여규정 및 학칙시행세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세칙 시행당시의 각 대학원 제적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4. 이 변경 세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학위의 중별)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변경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변경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변경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변경 세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변경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변경 세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변경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변경 세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변경 세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변경 세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변경 세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변경 세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변경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변경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변경 세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변경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변경 세칙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변경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변경 세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이 변경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대학원 수여학위명

과 정	계열 및 구분	학 과	수 여 학 위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문예창작학과	문학석사
		영어영문학과	
		중·한번역학과	
		일어일문학과	
		철학상담·심리학과	
		인문광고학과	
		문헌정보·사학과	문헌정보학석사
			문학석사
			기록관리학석사
		평생교육학과	교육학석사
		법학과	법학석사
		경찰소방학과	경찰학석사
			소방학석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석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경제·무역학과	경제학석사
			상학석사
		경영·회계학과	경영학석사
		경영정보·e비즈니스학과	
	유통관리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금융보험·부동산학과		
	자연계열	수학정보통계학과	이학석사
		물리학과	
		화학생물학과	
		생명응용학과	
		스마트바이오헬스학과	
		보육·가정상담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석사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공학계열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토목공학과	
		도시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지능시스템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IT융합학과	
		화학·환경·산업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디지털미디어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예체능계열	음악학과	음악학석사	
	미술학과	미술학석사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의학계열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한의학과	한의학석사	
학·연·산 협동과정	건축공학	공학석사	
학과간협동과정	동아시아국제학과	국제학석사	
	불교문화학과	불교학석사	
		철학석사	
		문학석사	
	스토리텔링학과	신문방송학석사	
		광고학석사	
		영화학석사	
		스토리텔링학석사	
		디자인학석사	
		예술학석사	
	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석사	
	영유아교육학과	의료경영학석사	
	보건학과	교육학석사	
		보건학석사	
		임상병리학석사	
		치위생학석사	
		방사선학석사	
		물리치료학석사	
의료경영학석사			
공간정보시스템학과	공학석사		

과 정	계열 및 구분	학 과	수 여 학 위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문예창작학과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중·한번역학과	
		일어일문학과	
		인문광고학과	
		철학상당·심리학과	철학박사
		문헌정보·사학과	문헌정보학박사 문학박사 기록관리학박사
		평생교육학과	교육학박사
		법학과	법학박사
		경찰소방학과	경찰학박사 소방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경제·무역학과	경제학박사
		경영·회계학과	경영학박사
		경영정보·e비즈니스학과	
		유통관리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자연계열	수학정보통계학과	이학박사
		물리학과	
		화학생물학과	
		스마트바이오헬스학과	
		의류학과	간호학박사
		간호학과	
	공학계열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지능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도시공학과	
		디지털미디어공학과	
		화학·환경·산업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예체능계열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학박사
	체육학과		체육학박사
	의학계열	한의학과	한의학박사
	학·연·산 협동과정	건축공학	공학박사
	학과간협동과정	동아시아국제학과	국제학박사
불교문화학과		불교학박사 철학박사	
스토리텔링학과		문학박사	
		신문방송학박사	
		광고학박사	
		영화학박사	
		스토리텔링학박사	
디자인학박사			
예술학박사			
경영학박사			
의료경영학박사			
영유아교육학과		교육학박사	
보건과의학과		보건학박사	
		임상병리학박사	
		치위생학박사	
	방사선학박사		
	물리치료학박사		
	의료경영학박사		

[별표 2]

특수대학원 수여학위명

특수대학원명	학과	계열	전공	학위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인문 · 사회	행정학, 정책학, 정부예산회계학	행정학석사(○○○전공)
	부동산학과		부동산법학, 부동산정책학	부동산학석사(○○○전공)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석사(○○○전공)
경영대학원		인문 · 사회	무역통상학	경영학석사(○○○전공)
			경영학	
			외식산업컨설팅학	
			금융보험학	
			재무부동산컨설팅학	
			호텔·컨벤션경영학	
산업문화대학원	전기및전자공학과	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공학석사(○○○전공)
	건축공학·건축설비공학과		건축공학, 건축설비공학	
	건축학과		건축학	
	토목공학과		토목공학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	
	기계공학과		기계공학	
	컴퓨터·산업경영공학		컴퓨터공학, 산업경영공학	
	환경공학과		환경공학	
	도시·부동산공학과		도시·부동산공학	
	소프트웨어응용공학과		소프트웨어응용공학	
	미디어·디자인공학과	미디어·디자인공학	디자인공학석사(○○○전공)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	미술학석사(○○○전공)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산업학	체육학석사(○○○전공)	
	예술치료학과	예술치료학	예술치료학석사(○○○전공)	
	음악학과	음악학	음악학석사(○○○전공)	
	뉴미디어음악학과	뉴미디어음악학		
	영화영상콘텐츠학과	영화영상콘텐츠학	영화영상콘텐츠학석사(○○○전공)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학	예술경영학석사(○○○전공)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인문 · 사회	교육방법및교육컨설팅
국어교육				
영어교육				
유아교육				
평생교육				
유아·초등영어교육				
청소년교육·상담				
창의영재교육				
독서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자연			수학교육	
			공동과학교육	
예체능			체육교육	
			태권도교육	
국가안전정책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인문 · 사회	경찰학	정책학석사(○○○전공)
	산업보안학과		범죄학	
	해양안전학과		산업보안학	
			산업안전학	
	소방방재학과		해양경찰학	
	해양안보학			
	소방학			
	재난관리학			



[별표 3]

## 대학원 학위종별 후드 색상

대 학 원	석·박사 학위명	색 상
일반대학원	문학	백색 (White)
	신문방송학	백색 (White)
	광고학	백색 (White)
	영화학	분홍색 (Pink)
	문헌정보학	오렌지색 (Orange)
	기록관리학	오렌지색 (Orange)
	철학	백색 (White)
	교육학	밝은파랑색 (Light Blue)
	법학	자주색 (Purple)
	경찰학	자주색 (Purple)
	소방학	자주색 (Purple)
	행정학	공작푸른색 (Peacock Blue)
	정치학	공작푸른색 (Peacock Blue)
	사회복지학	공작푸른색 (Peacock Blue)
	경제학	구리색 (Copper)
	상학	담갈색 (Drab)
	경영학	담갈색 (Drab)
	부동산학	황금색 (Golden Yellow)
	이학	황금색 (Golden Yellow)
	간호학	살구색 (Apricot)
	공학	오렌지색 (Orange)
	음악학	분홍색 (Pink)
	미술학	갈색 (Brown)
	디자인학	갈색 (Brown)
	체육학	황금색 (Golden Yellow)
	한의학	초록색 (Green)
	국제학	남색 (Indigo)
	불교학	백색 (White)
	의료경영학	담갈색 (Drab)
	보건학	황금색 (Golden Yellow)
	임상병리학	연녹색 (Yellow Green)
	치위생학	진보라색 (Palatinate Purple)
	방사선학	황금색 (Golden Yellow)
물리치료학	황금색 (Golden Yellow)	
스토리텔링학	백색 (White)	
행정대학원	행정학	공작푸른색 (Peacock Blue)
	부동산학	공작푸른색 (Peacock Blue)
	사회복지학	공작푸른색 (Peacock Blue)
경영대학원	경영학	담갈색 (Drab)
산업문화대학원	공학	오렌지색 (Orange)
	디자인공학	오렌지색 (Orange)
	미술학	갈색 (Brown)
	체육학	황금색 (Golden Yellow)
	음악학	분홍색 (Pink)
	예술치료학	황금색 (Golden Yellow)
	영화영상콘텐츠학	분홍색 (Pink)
	예술경영학	황금색 (Golden Yellow)
교육대학원	교육학	밝은파랑색 (Light Blue)
국가안전정책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진한자주 (Dark Purple)
	산업보안학과	
	해양안전학과	
	소방방재학과	

[별지 제1호 서식]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기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학 위 명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논문심사를 통과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 :

동의대학교 대학원장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동의대학교 총장 (인)

학위등록번호 : \_\_\_\_\_

[별지 제2호 서식]

##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기

박제 호

###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학 위 명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논문심사를 통과하여 박사  
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 :

동의대학교 대학원장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동의대학교 총장 (인)

학위등록번호 : \_\_\_\_\_

[별지 제3호 서식]

명예박사 학위기

명박제 호

학 위 기

성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함으로써 우리 나라 학술과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인류 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나타냈)기에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추천함.

20 년 월 일

동의대학교 대학원장 (인)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동의대학교 총장 (인)

학위등록번호 : \_\_\_\_\_

[별지 제4호 서식]

특수대학원 학위기 1

석 제 ○ ○ ○ 호

학 위 기

성명 ○ ○ ○

○ ○ ○ ○ 년 ○ ○ 월 ○ ○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 ○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제출한 아래의 논문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 ○ ○ 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 :

○ ○ ○ ○ 년 ○ ○ 월 ○ ○ 일

동의대학교 ○ ○ 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 ○ 학석사학위를 수여함.

○ ○ ○ ○ 년 ○ ○ 월 ○ ○ 일

동의대학교 총 장 (학위) ○ ○ ○ (직인)

학위등록번호 : 동의대○○(석)○○○

[별지 제5호 서식]

특수대학원 학위기 2

석 제 ○ ○ ○ 호

학 위 기

성명 ○ ○ ○

○ ○ ○ ○년 ○ ○월 ○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학점을 이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 ○ ○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 ○ ○ ○년 ○ ○월 ○ ○일

동의대학교 ○ ○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 ○석사 학위를 수여함.

○ ○ ○ ○년 ○ ○월 ○ ○일

동의대학교 총 장 (학위) ○ ○ ○ (직인)

학위등록번호 : 동의대○○(석)○○○

[별지 제6호 서식]

특수대학원 연구실적증명서

제 ○○○ 호

연구실적 증명서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과 석사학위과정(○○○전공) 연구생으로 소정의 과정을 수학과 그 연구실적이 양호하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의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 대학원연구등록에관한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이 대학원학칙 제11조의 등록에 관한 사항 중 연구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3조 (등록대상) 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자 <개정 2013. 5. 1>

② <삭제 2013. 5. 1>

③ 연구등록대상자는 2001학년도 이후 박사과정 입학자에 한한다.

제4조 (등록금) 당해 학기 등록금의 10%를 연구등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는 1회에 한한다. <개정 2013. 5. 1>

제5조 (제출서류) ① 연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취득을 위한 연구등록신청서를 지도교수를 통하여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주임교수는 연구등록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삭제 2013. 5. 1>

제7조 (자격상실) 연구등록을 한자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부 칙

1.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일반대학원연구등록에관한세칙은 폐지한다.
3. (경과조치) 2000학년도 이전 박사과정 입학자에게는 이 세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이 변경 세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대학원 학칙 제37조의 2에 의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1>

제2조 (범위) 이 세칙은 이 대학원의 대학원생에게 적용되며 별도의 지급 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령 및 각종 장학단체에 의해 선발되는 장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장학위원회) ① 장학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이 기능을 대학원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②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원위원이 되며, 간사는 대학원 부원장이 된다.

③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는 장학지침에 따라 대학원 행정지원실에서 주관한다. <개정 2008. 2. 1, 2014. 2. 1>

제4조 (장학생의 종류 및 자격) 장학생 선발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성적우수장학생

#### 가. 성적 우수 장학생

ㄱ. <삭제 2011. 1. 1>

ㄴ. 석사학위과정 일반전형 합격자중 학부성적이 평균 4.0/4.5 이상인 자. 단, 졸업예정자인 경우 지원서 제출시점의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1. 1, 2012. 10. 1>

ㄷ. 위 ㄴ의 입학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에게는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1. 1. 1, 2012. 10. 1>

나. <삭제 2011. 9. 1>

다. <삭제 2011. 9. 1>

라. 지도교수 추천 장학생 <신설 2011. 9. 1>

ㄱ. 석사과정 입학예정자 중 본 대학교 학부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 <개정 2012. 10. 1, 2015. 8. 1>

ㄴ. 지도교수 추천 장학생은 입학후 4학기 동안 등록금을 전액 면제한다.

ㄷ. 학부성적의 심의 기준은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서 제출시점의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ㄹ. 수혜자 선정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5. 1, 2015. 8. 1>

ㅁ. 석사과정 입학예정자 중 본 대학교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참여기간 내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

2. 연구장학생 : 이 대학원에 입학한 석사 학위과정 대학원생 중 미취업 학생에게는 등록금 일부를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 2013. 5. 1>

가. <삭제 2012. 10. 1>

나. <삭제 2012. 10. 1>

다. <삭제 2012. 10. 1>

3. 면학장학생 : 이 대학원에 입학한 석·박사 학위과정 대학원생에게는 등록금 일부를 면학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 2011. 1. 1, 2017. 3. 1>

가. <삭제 2012. 10. 1>

나. <삭제 2012. 10. 1>

다. <삭제 2012. 10. 1>

4. 공로장학생 : 학내외 활동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시킨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고시 합격자

나. 각종 대회 입상자

다.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신설 2015. 8. 1>

5. 근로장학생 :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0. 10. 1>

6. 보훈장학생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

7. 외부기탁 장학생 : 외부장학금은 기탁자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8. 학생회간부 장학금 : 대학원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총무는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해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9. 외국인학생 장학금 : 대학원 외국인학생의 특례입학에 관한 세칙에 의하여 정원의외로 입학한 외국인학생은 등록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10. 특수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3. 1>

11. <삭제 2017. 3. 1>

12. 학·군협정상장학금 : 육군본부와의 학·군 제휴협정에 따라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제5조 (자격규제)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징계를 받은 자

2. <삭제 2010. 10. 1>

3. <삭제 2010. 10. 1>

4. <삭제 2010. 10. 1>

5. 기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6. 기타 장학생으로서 부적격한 행위를 한자

제6조 (장학생의 선발)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 8. 1>

제7조 (장학금 수혜기간)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1학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성적 우수 장학생 및 지도교수 추천 장학생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9. 1>

제8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당해 학기 개시 전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 5. 1>

## 부 칙

1.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일반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세칙은 폐지한다.
3. 이 변경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변경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변경 세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변경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변경 세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변경 세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변경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변경 세칙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변경 세칙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변경 세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변경 세칙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변경 세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변경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원외국인학생의특례입학에관한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대학원학칙 제4조의 외국인학생의 특례입학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

제2조 (외국인의 정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된 자
3.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3조 (지원자격) 이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외국인학생의 특례입학 지원자격은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2. 박사학위과정은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제4조 (모집학과 및 인원) 모집학과는 이 대학원학칙 제4조 각 학위과정의 전학과로 하며, 별도의 입학전형에 의하여 정원의외로 입학할 수 있다.

제5조 (모집시기) 학생의 모집 시기는 이 대학원 입학전형 일정에 준한다. 다만, 연구생 지원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학과 교수회의의 승인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 중에도 입학할 수 있다.

제6조 (제출서류) 외국인 학생의 입학 관련 제출서류는 각 호와 같다.

1. 입학전형시 제출서류
  - 가. 입학지원서(소정 양식) 1부
  - 나. 출신대학 교수 추천서(소정양식) 2부
  - 다.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라. 대학성적증명서 1부(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 마. 해외거주 사실 확인서(한국계 외국인 및 재외교포인 경우에 한함) 1부
  - 바. 본인 및 보호자(부, 모)의 외국인 증명서 각 1부
2. 합격 후 제출서류
  - 가. 신원 및 재정보증서(소정 양식) 1부이며, 보증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증을 받아야 함.
  - 나. 본인 호적등본(한국계 외국인에 한함) 1부
  - 다. 본인 여권 사본(반드시 이 대학원에서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 라. 대한민국 외무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함) 1부
  - 마. 학위기 사본 1부(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대학, 대학원 석사학위기 사본)
  - 바. 졸업증명서 1부(졸업 예정자에 한함)

제7조 (전형방법) ① 서류전형 및 구술고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 다만, 입국사정 관계로 입국이 불가능한 지원자의 경우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입학할 수 있는 경우 서류전형에 의하여 조건부로 예비 선발하고, 구술고사 후 최종 선발한다.

② 예능계는 서류전형과 구술고사로 하되, 경우에 따라 실기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생) 외국인 학생은 대학원학칙 제34조의 연구생으로 청강할 수 있으며, 그 입학 절차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9조 (장학혜택) 학업 성적이 특별히 우수하고, 학과에서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학칙 및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기타) 국제학술 교류협력 등에 의하여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 한국어 사용 능력이 미흡한 자는 본 대학교 부설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 2013. 2. 1>

## 부 칙

1.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일반대학원외국인학생의특례입학에관한세칙은 폐지한다.
3. 이 변경 세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변경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변경 세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원공개강좌운영에관한세칙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세칙은 대학원학칙 제33조(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과정은 산학협동을 증진하고 직무·교양 또는 연구상 전문적인 학식·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공개강좌의 종류) 이 대학원에 행정대학원 최고정책결정자과정 및 부동산최고위과정,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및 전문가과정, 산업문화대학원 산업최고전략과정을 둔다. <개정 2010. 3. 1, 2013. 3. 1>

제4조 (운영) ① 이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장은 이 과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필요에 따라 본 대학교 학칙과 대학원학칙의 취지에 맞추어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이 과정을 설치한 대학원은 별도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이하 “최고과정”이라 한다) 그 밖의 기타 과정을 둘 수 있다.

###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이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은 이 과정을 설치한 대학원의 대학원위원이 되며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6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과정 개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강생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3. 제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 (임기 및 의결방법) 위원회의 임기 및 의결방법은 이 대학원학칙 제40조와 제42조에 준한다.

### 제3장 모집정원 및 전형방법

제8조 (정원) 공개강좌의 과정별 모집정원은 약 60명 내외로 하고, 각 과정별로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입학자격) 이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각 기업체의 장 및 중견 간부사원, 고급공무원, 관련 직종 종사자 및 지역사회의 유지 그밖에 이 과정 위원회에서 동등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10조 (구비서류) 이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전형방법) 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한다.

### 제4장 수강기간 및 등록

제12조 (수강시간) 매회 수강기간은 원칙적으로 최고과정은 1년(주당 2일, 4시간)으로, 기타 공개강좌과정은 경우에 따라서 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개강) 최고과정은 매년 3월 및 9월에 개강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개강좌과정은 경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수강등록) 수강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강료에 대한 반환사유가 발생되었을 시 본 대학교 학칙 및 등록금에관한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 제5장 수 료

제15조 (출석 및 수료증서수여) ① 각 과정별 수강자는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가 되며 최고과정의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기타 공개강좌과정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② 최고과정 수료자 중 소정의 졸업논문을 제출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실적증서를 수여한다.

## 제6장 표 창

제16조 (표창) 재학기간 중 학업이 뛰어나거나 이 과정 또는 본 대학교 및 대학원의 발전 공헌이 큰 사람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1.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행정대학원공개강좌운영규정, 경영대학원공개강좌운영규정, 산업대학원산업최고전략과정운영규정, 영상정보대학원리더십최고과정운영규정은 폐지한다.
3.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변경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변경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b>수료증서</b>	
성 명	20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00 대학원 00000 과정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동의대학교 00 대학원장 000 박사 0 0 0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수료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동의대학교 총장 000 박사 0 0 0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 수료증서

성 명 20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00 대학원 00000 과정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동의대학교 00 대학원장 000 박사 0 0 0 (인)

[별지 제3호 서식]

최제 호	
<b>연구실적증서</b>	
성 명	20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00 대학원 00000 과정에서 1년간 아래 논제에 대한 연구를 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였음을 증명함.	
논제 :	
20 년 월 일	
동의대학교 00 대학원장 000 박사 0 0 0 (인)	

## 대학원학연산협동과정에관한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대학원학칙 제3조에 의거 동의대학교와 협력관계에 있는 연구기관, 산업체 및 정부기관(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 간에 체결한 연구 및 교육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의거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연산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위과정) 본 협동과정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제3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협동과정의 학사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연산협동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조 (학사운영) 동의대학교대학원학칙과 제 규정에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학과 및 정원) 협동과정에 설치하는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본 협동과정을 위한 협약기관과의 협약서에 명시된 분야와 관련되는 학위과정으로 하며, 구체적인 학과 및 정원은 학칙에 따른다.

제6조 (입학) 입학 및 전형절차는 대학원학칙에 따른다.

제7조 (교과과정의 운영) ① 교과과정의 운영은 대학원학칙과 세칙을 따르며, 교과과정 중에서 기초 및 전공과목은 원칙적으로 대학원이 담당하고 전문분야의 전공은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협약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에 필요한 실험실습 및 연구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관이 담당할 수 있다.

제8조 (인력교류) ① 협동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규정에 따라 협동과정에 참여하는 협약기관의 연구원을 본 대학의 외래교수로, 본 대학의 교원을 협약기관의 위촉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외래교수와 위촉연구원에게는 양 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① 학위논문의 지도는 대학원과 협약기관에서 각 1명씩 지도교수를 선임하는 공동지도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학칙에 따른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협동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대학원위원회 상정)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 부 칙

1. 이 세칙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원학과간협동과정에관한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대학원학칙 제3조에 의거 학과간 협동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위과정) 본 협동과정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제3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협동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며,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5. 1>

③ <삭제 2013. 5. 1>

④ 협동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 (학사운영) 대학원학칙과 제 규정을 따르되,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교과과정운영) 협동과정을 설치한 학과는 그에 따른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협동과정별로 교과과정을 둔다.

제6조 (학과주임교수) 과정별 학과(전공)주임교수는 본교의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① 협동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에 따른다.

② 학위논문의 지도는 학과간 공동지도교수로 할 수 있다.

제8조 (대학원위원회 상정)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 부 칙

1. 이 세칙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 세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원학과주임교수지도교수및공동지도교수에관한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대학원학칙 제38조에 의거 학과주임교수 및 공동지도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과주임교수) 학위과정이 설치된 각 학과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전공)주임교수를 둔다.

제3조 (학과주임교수의 임무) ① 학과(전공)주임교수는 석·박사학위과정의 학사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학과주임교수는 필요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학과의 전체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 (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담당학생의 수학지도, 연구 및 논문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1년 이내에 정년에 달하는 교원은 원칙적으로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없다.

③ 논문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할 경우 논문지도를 퇴임 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1>

④ <삭제 2013. 5. 1>

⑤ 편입학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입학과 동시에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0. 10. 1>

제5조 (공동지도교수) ① 공동지도교수는 지도교수와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동지도의 경우 정지도교수와 부지도교수로 구분하며, 부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하며 외부교수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경우에는 외부대학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부교수 이상 또는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다만, 정지도교수는 본 대학의 정년제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2. 7. 1, 2014. 9. 1>

③ 공동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의 연구 및 학위논문작성지도 등을 위하여 2인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④ 공동지도교수는 논문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제6조 (지도교수의 변경) 지도교수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사유(질병, 휴직, 국외파견 등)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변경원을 제출, 대학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공동지도교수는 지도교수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단, 출장 및 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복교 후 학위수여를 위한 논문지도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논문지도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 부 칙

1. 이 세칙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 세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변경 세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변경 세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변경 세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변경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원편입학에관한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대학원학칙 제10조에 의거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자격)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일정기간 이수한 자 또는 수료자

2. 박사학위과정

국내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일정기간 이수한 자 또는 수료자

제3조 (지원구비서류) 편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다음의 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입학지원서

나. 전적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다. 전형료

라.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마. 석사과정 재학 또는 수료증명서 <신설 2013. 5. 1>

2.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지원서

나. 박사과정 재학 또는 수료증명서 <개정 2013. 5. 1>

다. 전적 대학원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라. 전형료

마.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3조의2 (지원전공분야) ①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편입학 지원전공분야는 각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학위과정에 타 전공 입학자는 선수과목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조신설 2013. 5. 1>

② 선수과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수업·이수학점·학점인정에관한세칙에 따른다.

제4조 (전형방법 및 기준) 편입학 전형은 신입학 전형에 준한다.

제5조 (성적인정 및 수업연한) ① 편입학한 학생의 성적은 학과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대학원 교과과정에 따라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편입학자는 이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2학기 이상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3. 5. 1>

제6조 (준용) 이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 부 칙

1. 이 세칙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 세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원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관한세칙

2013년 5월 1일자 폐지 → 대학원입학전형관리위원회 폐지로 인한 세칙 폐지

## 대학원입시공정위원회에관한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대학원 학칙 제8조 및 제8조의 2에 의거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학원입시공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입학전형 관리 업무에 입회하여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입학시험 부정방지 대책 수립과 심의
2. 입학시험의 공정한 관리·지도·점검
3. 입학전형의 자체감사 실시
4. 기타 입시 부정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 위촉일로부터 신입생 확정시까지로 한다.

제5조 (임무) 위원회는 공정성 확보에 대해 분석, 연구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입학전형 마감 후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칙) 이 세칙에 없는 사항은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부 칙

1.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원수업·이수학점·학점인정에관한세칙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대학원 학칙 제4장의 수업일수, 학점, 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강신청) ① 각 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1>

② 일반대학원의 수강신청 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매학기 9학점(논문지도학점 포함)을,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매학기 12학점(논문지도학점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선수과목 또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학기에 6학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단, 특수대학원의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6학점(실기과목 학점은 제외)을 초과할 수 없으나, 최종학기(5학기)에 한하여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행정대학원, 산업문화대학원은 매학기 9학점까지, 교육대학원은 8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3. 1, 2010. 3. 1, 2012. 5. 1, 2013. 3. 1, 2016. 5. 1>

③ 강의시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정정을 하여야 한다.

④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타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수료에 필요한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제3조 (수업일수·휴업일) ① 각 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③ 각 대학원의 휴업일은 본 대학교 학칙 제7조에 의한다.

제4조 (수업) 일반대학원의 수업은 전일제로 하며, 각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장 이수학점·평가

제5조 (수료 학점) 각 과정별 수료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9. 1, 2009. 2. 1, 2010. 3. 1, 2013. 3. 1, 2016. 3. 1, 2017. 3. 1>

1. 석사학위과정 : 26학점 이상

대학원	기초공통	전공	논문(특수)지도	계
일반대학원	6 ~ 9	15 ~ 18	2	26
행정대학원	0	24 ~ 28	2 ~ 3	26 ~ 30
경영대학원	2	22 ~ 26	2	26 ~ 30
산업문화대학원	6	18 ~ 24	2	26 ~ 30
교육대학원	4	20 ~ 26	2	26 ~ 30
국가안전정책대학원	6	18 ~ 24	2	26 ~ 30

※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노인전문간호사과정 37학점이상(기초공통 15학점, 전공 20학점, 논문(특수)지도 2학점)

2. 박사학위과정 : 40학점 이상

가. 기초공통 9 ~ 12학점, 나. 전공 24 ~ 27학점, 다. 논문지도 4학점

제6조 (부전공 이수 및 관련학과 학점) ① 각 과정 동일학과 내에서 주전공 이외의 전공과목에서 3 ~ 12학점을 부전공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이는 제5조 각 호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된다. <개정 2009. 2. 1>

② 타 학과(타 대학 포함) 과목 중 이수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과목의 이수학점은 제5조 각 호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된다. <개정 2009. 2. 1>

③ 제2항의 과목인정은 학과별 교과과정에 수록되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강 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특수대학원의 자격취득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 5. 1>

제7조 (논문·작품지도) 각 과정의 논문(작품)지도 과목은 논문지도 교수가 담당하며 일반대학원 및 산업문화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에, 특수대학원(산업문화대학원 제외) 석사학위과정은 5학기에 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3, 4학기에 각각 2학점씩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 2013. 3. 1>

제8조 (학업성적·평가·정정) ① 학업성적은 시험(정기시험, 수시평가), 출석, 과제물, 발표 등 수업의 기여도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②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가는 다음과 같으며, 수강과목별 출석률이 4분의 3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70점 이상이면 이수 학점에 가산된다.

등급	평점	점 수
A+	4.5	95 ~ 100
A0	4.0	90 ~ 94
B+	3.5	85 ~ 89
B0	3.0	80 ~ 84
C+	2.5	75 ~ 79
C0	2.0	70 ~ 74
F	0	69이하

③ 성적정정이 필요한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정정정원(소정양식)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9조 (출석부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 종료 후 소정기일 내에 담당 교과목 출석부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선수과목

제10조 (선수과목) 선수과목이란 교과과정 중 학문의 난이도에 따라 우선해서 개설해야 하는 과목을 말하며, 학위과정 별, 학과별 선수과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선수과목 이수대상) ① 학칙 제9조의 지원전공분야가 동일하지 않는 자는 일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에서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이 때 지원전공분야의 동일 여부는 대학원장이 판정한다.

제12조 (선수과목의 결정) 선수과목의 결정은 해당 학과에서 개설된 하위 학위과정 과목 중에서 필수적인 과목을 이수 보충하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선수과목 이수 학점 및 인정) ① 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각 과정 9학점(교육대학원은 6학점) 이상으로 하고, 1~2학기차에 이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대학원 수료에 필요한 학점과는 별도로 처리하며 성적 평가에는 가산되지 않고 “가” “부”만 결정한다. <개정 2010. 3. 1>

② 해당학과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과목을 이미 이수한 자는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선수과목 학점인정신청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 (선수과목 개설) 선수과목을 따로 개설할 수 없으며, 해당학과에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과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유사한 학과(특수대학원 포함)의 교과목 중에서 이수케 할 수 있다.

#### 제4장 학점교류 및 인정

제15조 (학점교류 및 인정) ① 각 대학원과 국내·외 대학교간 협력 및 외국대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와 학생의 전공분야 연구를 위하여 취득한 학점을 당해 학과주임교수가 인정하고 대학원장의 허가에 의하여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국내외 대학원(본 대학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이 B이상인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1>

③ 학사과정 재학시 본 대학교 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의 이수학점으로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⑤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재입학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

제16조 (학점인정 신청) ① 대학원 학칙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기취득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와 함께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가 작성한 학점인정서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3. 1>

② 제1항에 의한 학점인정은 학점으로만 인정하며 성적은 P(Pass)로 표기한다.

#### 부 칙

1.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교과과정및학과등록에관한세칙은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세칙의 부칙 2(폐지규정)에 의하여 구 세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세칙 시행당시의 각 대학원 재적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세칙을 적용한다.
4. <삭제 2006. 3. 1>
5. <삭제 2006. 3. 1>
6. <삭제 2006. 3. 1>
7. <삭제 2006. 3. 1>
8. 이 변경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변경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변경 세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변경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변경 세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변경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변경 세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변경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변경 세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제2항은 2009학년도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17. 이 변경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원교육과정전문위원회에관한세칙

2013년 5월 1일자 폐지 → 대학원교육과정전문위원회 폐지로 인한 세칙 폐지

## 산업문화대학원산학협력위원회운영규정

<규정 명칭 변경 2013. 3. 1>

제1조 (목적) 동의대학교 산업문화대학원 산학협력위원회는 산업문화대학원과 회원사간의 공동 학술세미나, 기술교육, 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등 산업문화대학원과 동창회 발전을 도모함에 목적을 둔다. <개정 2006. 11. 1, 2013. 3. 1>

제2조 (명칭) 이 위원회는 동의대학교 산업문화대학원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사무실은 산업문화대학원 내에 둔다. <개정 2013. 3. 1>

제3조 (회원자격) 위원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하고 정회원은 동의대학교 공과대학 전임교원과 이 대학원의 산업최고전략과정을 수료한 회원사의 대표자(또는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원)로 하며, 준회원은 이 대학원과 정회원이 추천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참여범위) 위원회의 회원은 기술교육, 기술지도 및 기술개발에 대한 과제 제시와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과제의 제시시기) 기술지도 및 개발 과제의 제시시기는 매년 12월말까지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심의의결) 제시된 과제는 연구직 회원에게 회람하여 2월말까지 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회원사 대표자와 협의하여 사업 시행기간 및 소요예산 등을 확정한다. 확정된 과제는 3월부터 시행한다.

제7조 (연구비) 정회원사가 의뢰한 과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사업 시행시 일정액의 연구비를 보조한다.

제8조 (연구직회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직 회원을 두며, 연구직 회원은 동의대학교 공과대학 전임교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 (연구직회원의 상주) 사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구직 회원이 당해 회원사에 일정기간 상주할 수 있도록 회원사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 및 홍보) 사업시행 결과는 모든 회원에게 홍보하고 이 대학원 전시실에 전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임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명
2. 간사 : 1명
3. 임원 : 10명 이내 <개정 2006. 11. 1>
4. <삭제 2006. 11. 1>

제12조 (임원의 구성) 위원장은 대학원장, 간사는 부원장으로 하며, 동창회 당해연도 회장과 사무국장은 당연직 임원으로 위촉되고, 전임회장들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관심이 지대한 사람들 중에서 약간 명을 임원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 11. 1>

제13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 전반을 수행하고, 결과를 회원사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의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말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06. 11. 1>

제15조 (임원회의 의결권) 임원회는 회칙 제정 및 변경, 사업 계획 심의, 자문위원 자격을 심의 의결한다.

제16조 (임원회의 의사결정) 임원회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의사결정은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위원이 추천하는 자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결정권은 없다.

제18조 (회계연도)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위원장은 회계보고서를 위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기금조성) ① 당해연도 졸업생과 동창회원이 조성한다. <개정 2006. 11. 1>

② 위원회의 기금은 산학협력 기금, 특별기금, 찬조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06. 11. 1>

제20조 (기금관리) 조성된 기금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조성된 기금은 동의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지정 기탁한다. 단, 동의대학교의 “대학발전기금조성 및 관리규정”에 따라 이 기금은 산업문화대학원 산학협력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개정 2006. 11. 1, 2013. 3. 1>
2. 조성된 기금의 일부를 회원사 간의 공동학술세미나, 기술교육, 기술지도 및 개발 등 산업문화대학원과 산업문화대학원 총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쓸 수 있다. <개정 2006. 11. 1, 2013. 3. 1>
3. 집행내역과 집행금액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06. 11. 1>

제21조 (기타) 위원회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변경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변경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변경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변경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원외국대학과의복수학위수여에관한세칙

<규정 명칭 변경 2013. 5. 1>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대학원학칙 제30조의2에 의거 동의대학교 대학원(이하 “이 대학원”이라 한다)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 대학교(이하 “교류대학”이라 한다) 대학원과정 과의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복수학위수여라 함은 이 대학원과 교류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 대학원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수학기간 및 신분) ①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교류대학에 교류하는 학생의 수학기간은 이 대학원 및 교류대학에서 각각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교류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이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한다.

제4조 (지원 자격) 교류대학에서 복수학위 과정의 이수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이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삭제 2010. 4. 1>
2. 교류대학 국가의 언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
3. 이 대학원 학칙에 의한 징계 사실이 없는 자
4. 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5.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5조 (지원 시기) 지원을 원하는 자는 교류대학의 학기 개시 3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학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지도교수 추천서 1부
4. 성적증명서(국, 영문) 각 1부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6조 (선발) ① 복수학위 지원자에 대한 선발은 지원서류 및 언어능력을 심사하며, 언어능력심사는 교류대학 국가의 언어능력 인증서 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판단하여 교류대학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② 선발인원은 교류대학과의 협정에서 정한 인원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학능력의 판단에 따라 교류대학과의 협의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7조 (학점인정) ① 교류학생은 이 대학원과 교류대학의 교육과정 중 전공과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교류대학의 규정에 따르며, 학점 및 성적인정은 이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③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은 이 대학원 교과목 중 유사한 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④ 학점인정과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학과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제8조 (등록 및 학위수여) ① 교류학생은 이 대학원의 등록 절차에 따라 매학기 소정의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교류학생은 이 대학원에서 최소한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교류학생이 이 대학원과 교류대학의 양교 규정에 따라 학위수여 자격을 갖추었을 때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준수사항) ① 교류학생은 이 대학원과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교류학생은 우리나라와 교류대학 국가의 출·입국 관리법 및 제반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③ 교류학생은 교류대학 수학 중 본 대학교 총장의 승인 없이 수학을 포기하거나 휴학할 수 없다.

제10조 (기타)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대학원 학칙과 교류대학과의 체결한 협정에 따른다.

#### 부 칙

1. 이 세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복수학위과정 지원서

지 원 자	소 속	대학원	학과	전공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번		학 년		
	주 소			전화번호	
				E-MAIL	
	총 취득학점			평점평균	
병 역	필( ) 미필( ) 해당없음( )				
복 수 학 위 과 정	국 가				
	대학명				
	전 공				
	주 소				
	기 간	20 . . ~ 20 . . ( 개월간)			
<p>위와 같이 복수학위과정을 지원합니다.</p> <p>년 월 일</p> <p>지 원 자 (인)</p> <p><b>동의대학교총장 귀하</b></p>					
<p>첨부서류 : 1. 학업계획서 2. 지도교수 추천서 3. 성적증명서 1부</p>					



## 대학원계약학과설치·운영에관한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와 동의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동의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② “채용조건형”이라 함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재교육형”이라 함은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범위) 본 대학교와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제4조 (설치조건)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1.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제5조 (학위과정) 계약학과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 (설치) ① 계약학과는 학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산업체등과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한다.

② 운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2.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등록금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에 재학 중 퇴직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계약학과는 본 대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계약학과의 명칭·정원 및 학위) ① 계약학과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약학과의 명칭·학생정원 및 학위명은 별표와 같다.

제8조(입학지원 자격 등)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자
2. 박사과정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자

제9조(학생의 선발) 학생의 선발은 특별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학과의 특성에 따라 서류전형, 필기고사, 면접고사 등의 전형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학기는 매학년도 2개 학기로 한다.

②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수업)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한다.

제12조(교과과정의 편성·이수) ① 교과과정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 시 요구나 의뢰받은 내용을 반영하되 본 대학교 대학원교과과정운영에관한세칙에 따라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교과과정의 수강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이수한다.

제13조(학점인정의 특례) ①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계약학과 교과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 해당 계약학과 교과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과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주임교수가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졸업학점 및 수업연한)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은 본 대학교 대학원학칙에 따른다.

제15조(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또는 유사한 학과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기간은 운영계약에 따르되, 재학연한 이내로 한다.

제16조(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②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제6조제2항제5호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그 부담금은 해당 산업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등록금 등) ①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학기별로 소정의 등록금을 징수하며, 등록금 외에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등록금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학생의 등록금 등은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의 등록금 등은 산업체 등에서 전액 부담하며,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의 등록금 등은 총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학생이 부담하고, 동 부담금 외 나머지 금액은 산업체 등에서 부담한다.

④ 등록금 등은 본 대학교의 고지에 의하여 산업체 등에서 산업체 부담금과 학생 부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며, 간사는 대학원 부원장으로 한

다.

③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학과별 관련 규정의 개정
2. 계약학과별 교육과정과 학과운영
3. 계약학과의 폐지와 학생 정원
4. 계약학과별 예산과 결산
5. 계약학과별 학생의 입학, 수료 및 졸업
6. 계약학과별 발전계획 등 중요한 사항

제20조 (협력위원회) ① 교육의 내실과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교와 산업체등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협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은 산업체 등과 협약시 따로 정한다.

제21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대학원학칙을 준용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을 경우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1. 이 세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 세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변경 세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3. 5. 1, 2017. 2. 1>

계약학과의 명칭 및 학위명

대학원	학과(전공)	학위과정	정원	학위명
대학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석사	15	공학석사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세칙 제6조에 의하여 개설된 ○○대학원  
(○○○○학) ○○학위과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동의대학교 대학원장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의대학교 총 장 (인)



## 대학원자체평가에관한세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의대학교학칙 제66조(자체평가)에 의한 자체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3조 (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본 대학원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평가영역) 평가영역은 대학원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발전 및 운영계획
2. 교육 및 연구
3. 대학원정보공시항목 외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평가시기)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우리 대학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자체평가위원회)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자체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본 대학교의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 및 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대학원위원회 위원은 겸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2. 대학원자체평가 심사 및 결과보고 등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 사무는 대학원행정지원실에서 관장한다.

제8조 (소위원회) 필요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실사)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부서에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결과 공시) 자체평가 결과는 우리 대학의 홈페이지의 대학자체평가공시 등을 이용하여 공시한다.

제11조 (시행지침)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대학원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 부 칙

1.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